

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일자 2008. 12. .

제 출 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구미시 농업기계구입 지원대상을 농업인에서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확대하려고 했으나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인에 포함되므로 현행대로 함

2. 수정 주요내용

- 구미시 농업기계구입 지원대상을 “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”에서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“영농조합법인”을 삭제함(안 제3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- 「농업기계화촉진법」 제4조제1항

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안 제3조제1항 중 “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”을 현행대로 “농업인”으로
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	안
제3조(지원대상 및 범위) ①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<u>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</u> 이 정부의 농업기계화사업 기종으로 선정된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로서 한국농업기 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되는 농업기계가격표에 의한 구입가격 100만원 이상의 농업기계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공동이용 농업기계에 한하여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도 지원할 수 있다.	제3조(지원대상 및 범위) ①..... <u>농업인</u> 이

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명 “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”를 “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”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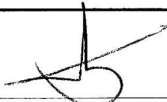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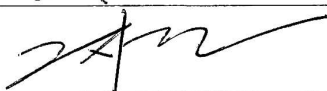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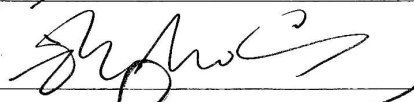
제3조(지원대상 및 범위)①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이 정부의 농업기계화사업 기종으로 선정된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로서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되는 농업기계가격표에 의한 구입가격 100만원 이상의 농업기계로 하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다만, 공동이용 농업기계에 한하여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.

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명

의원명	서명	날인
최호권		
김재경		
김도문		
이진석		
이재근		
이갑선		
유서강		
홍보		
김영호		
한정우		
백세희	